



제426 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심사 청구기간 기산점 규정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 의원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제회의 공제급여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산점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u>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u> 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u>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현황(‘21 ~ ‘23)》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학교안전공제회 심사청구*	115	124	157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청구**	20	30	20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자료: 교육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심사청구 기산점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²⁾ 개별법상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정비하려는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유사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에 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짐.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로³⁾ 이해됨.

이의신청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은 ‘처분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⁴⁾, 「행정절차법」에서 송달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청구 기산점을 ‘송달받은 날부터’로 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또한, 현행법상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의 소 제기 기산점을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로 규정⁶⁾하고 있으므로 법률 조문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제도 관련 각 개별법이 청구기간, 처리기한·연장기한 및 청구기간 기산점 등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총 19건 발의되어 있음.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부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재심사청구 제기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산정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현재도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의 해석을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정 실익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